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86호)

2025. 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7조의3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2024. 10. 18.

다. 회 부 일: 2024. 10.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 부정판매 금지(안 제7조의3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 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의3제1항).
-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함(제2항).
- 위 조항을 위반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u> <u>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u> <u>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u> <u>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u>

<신 설>	<u>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누구든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부정판매된 입장권등의 확인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u> <u>제19조(벌칙)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	---

다. 검토사항

-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¹⁾ 등을 이용해 유명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입장권 등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온라인을 통해

1)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의 부정판매(암표 매매)가 성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²⁾

○ 현재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³⁾에 따라 경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나 그 수준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벼워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⁴⁾ 장소적 범위도 경기장·정류장 등 오프라인 공간으로 한정되어 있음.

- 그에 따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티켓 판매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죄⁵⁾의 적용만이 가능한 실정임.

○ 한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연 등 다른 분야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금지·처벌규정이 아래와 같이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이스포츠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지 않고 있음.

- 「공연법」 6): 2023. 3. 21. 도입, 2024. 3. 22. 시행

2) 문화일보, “‘매크로’ 돌려 수십배 폭리…예매 못한 전편, 울며 겨자먹기 구매”, 2024. 1. 24.. 국민일보, ““16만원 임영웅표 100만원에”...가요계 온라인 암표 골머리”, 2024. 1. 8. 파이낸셜뉴스, ““페이커 경기 300만원에 판다”..월드컵 결승전 암표 “부르는 게 값””, 2023. 11. 15. 등 기사 참조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사람

4)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는 범칙금을 16만원으로 규정함.

5)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6)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2023. 8. 8. 도입, 2024. 2. 9.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 8): 2024. 3. 26. 도입, 2024. 9. 27. 시행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⁹⁾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처벌¹⁰⁾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등 현행 법체계로 규율하기에 불충분한 압표 매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연,

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8)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9) 참고로, 개정안은 ‘부정판매’를 「공연법」 등 타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1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법」 등 다른 입법례와 동일함.

체육시설 이용 또는 운동경기 입장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이며, 개정안에 맞추어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온라인 거래는 규제하지 않는 「경범죄 처벌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공연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모두 매크로를 이용하여 입장권 등 또는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경우도 매크로를 이용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부정판매는 현행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본 법률에서는 온라인 부정판매만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안 제7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부정 판매의 확인 방법·절차 등은 향후 기술 변화에 따른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참고로,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압표 매매를 금지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프로스포츠 경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스포츠 경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상영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다수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음.

[압표 매매 관련 유사 법률안 발의 현황]

법률안명	제안자	주요 내용	제안일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조인철의원 등 10인		2024.12.10.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2024.8.19.
	조계원의원 등 13인		2024.10.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8.
	박수영의원 등 13인		2024.10.11.
	김준혁의원 등 10인		2024.11.6.
	강유정의원 등 10인	입장권 판매자에게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 의무화	2024.9.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 무관 <u>영화 입장권·관람권</u> 등 부정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u>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u> 등 압표판매 금지 등	2024.11.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0인	온·오프라인 불문 암표매매 행위 처벌	2024.9.27.
	민형배의원 등 11인		2024.10.21.
	조인철의원 등 12인		2024.12.10.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기차 승차권 등의 암표 판매 금지 등	2024.11.6.
	이연희의원 등 19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차 승차권 구매 금지	2024.11.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금지	2024.12.10.

문 의 처

02)6788-5376